

수 신 각 정당

발 신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https://cfoi.or.kr> , <https://nosanjae.kr> )

제 목 [정책질의서] '산업재해에 대한 알권리 보장 및 정보공개 확대'에 대한 귀 정당의 입장을 묻습니다.

날 짜 2024.03.18

문 의 김예찬 [cfoi@opengirok.or.kr](mailto:cfoi@opengirok.or.kr) / 010-8873-8394

## 정 책 질 의 서

'산업재해에 대한 알권리 보장 및 정보공개 확대'에 대해  
귀 정당의 입장을 묻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모든 시민이 알권리를 누리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에 '산업재해에 대한 알권리 보장 및 정보공개 확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정보공개 확대는 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정책 질의를 드립니다.

## <중대재해 발생 사실의 신속한 공표 및 게시 기간 제한 삭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기업의 과실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해 ‘형이 확정’된 후에야 사실을 공표하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지 1년이 지나면 이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는 때까지, 또 공표를 위한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대재해가 발생한지 2~3년 후에야 그 발생 사실이 ‘늦장 공개’ 되는 경우가 많고, 또 게시 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인해 공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센터는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공개 대상으로 삼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내용을 ‘범죄의 형이 **선고**되어 통보된 사업장’으로 개정하여, 1심 판결 이후에는 공표 절차를 밟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공표기간은 **1년**으로 한다’는 동 시행령 제12조 제5항을 삭제하여, **게시 기간의 제한 없이** 공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기업의 주의 의무 환기를 위해 **1심 판결 직후 관련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귀 정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	
기타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공표 기간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	
기타			

**<산재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정보공개>**

최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명단에 대해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 뿐 아니라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센터는 안전한 일터,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발생 일시, 발생 사업장 명, 재해로 인한 사상자 수 등의 정보가 보다 폭넓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슈와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이나 영국 안전보건청의 경우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가 발생한 사업체 이름, 지역, 재해 주요 내용, 사고 유형 및 처벌 내역 등의 정보를 데이터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시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발생 일시, 발생 사업장명, 재해로 인한 사상자 수 등의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	
기타			

## <구직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채용정보 플랫폼의 산재 정보공개 의무화>

매년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지만, 구직자들은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장이 안전한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많은 구직자들이 채용정보 플랫폼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채용정보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업 정보에서는 산재가 일어난 현황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의무 규정에 "구인자가 구인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대상인 사업장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을 골자로 하는 직업안정법 개정 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 구직자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선택권 보장을 위해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비롯해 잡코리아, 사람인 등 채용정보 플랫폼이 기업의 산재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	
기타			

위의 정책과제에 대한 귀 정당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2024년 4월 1일까지 e-mail([cfoi@opengirok.or.kr](mailto:cfoi@opengirok.or.kr))로 회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신 내용은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 및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